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8.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년 8월 3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이 영 복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 12. 31 로 한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1) 안 제1조에서는 2008. 1. 1일자로 「지방자치법」(법률 제

8435호)가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조문 중 “ 「지방자치법」 제133조” 가 “같은 법 제142조” 로 변경

(2) 안 제3조에서는 “구금고” 란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라 2010. 9. 2일자로 제정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 로 변경

(3) 안 부칙에서 “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추가하여 시행일 개정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5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 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통일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변경조문 적용(안 제1조)
- 나. 조례의 존속기한 삭제 및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부칙)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상의 일부 용어 변경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부칙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1. 7. 28 ~ 8. 17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08. 18)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라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을 ““통합관리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유자금”이라 함은 구”를 ““여유자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를 “해당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금고”라 함은”을 ““구금고”란”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운용관”이라 함은”을 ““기금운용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통합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을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과 동법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조례 제621호 부칙 중 “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관리기금”이라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함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 금고”라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관리기금”이란 ----- 2. “여유자금”이란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 회계연도-----</u> 3. “구 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

현행	개정안
<p>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 운용관을 말한다.</p>	<p>4. “기금운용관”이란 ----- ----- -----</p>
<p>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p>	<p>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존속기한은 5년----- ----- ----- -----</p>
<p>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7조에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p>